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21.1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이하 “보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제대학교에 설치하는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적용 대상 교직원의 보수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조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2.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책정
 3. 기타 보수 규정 운영 개선사항 권고 및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 ② 위원회는 보수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학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회의 참석 및 전문가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장, 총장이 지명하는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교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③ 교원 위원은 전체교수회의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 ④ 직원 위원은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 ⑤ 교직원의 보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원 소위원회 :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교원 위원
 2. 직원 소위원회 :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직원 위원
- ⑥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교직원의 자격 또는 보직을 상실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3. 사임하였을 때

-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 제8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매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보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를 개최·운영한다.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련 보직자와 교직원의 출석 발언) 위원회가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대학 교직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대학에 즉시 통보하고, 대학은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15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규정의 개정

제16조(규정 개정의 제안)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2인 이상의 위원이나 위원장 또는 총장의 발의로 제안 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대학은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만료)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내 제 규정의 절차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